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리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농업성 간의 중조 두만강 류역의 중국측 싸이완즈 촌-시웨즈촌 사이와 조선측 훈몰리-승랑리 사이의 치수 공사에 관한 의정서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리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농업성은 중조 두만강 류역의 중화 인민 공화국 길림성 훈춘현 싸이완즈촌-시웨즈촌 사이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함경북도 경원군 훈몰리-승랑리 사이의 홍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상기 지구의 치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양국의 영토 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국 인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에 밑각하여 본 의정서에 지적된 지구내의 치수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상기 지구내에서 상대방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제수시설들은 구축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 의정서가 체결되기 전에 준공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에 악영향을 줄 때에는 자체로 즉시 중지하거나 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2 조 쌍방은 본 의정서에 지적된 지구내의 치수 공사에 대한 조사 설계 사업을 공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술 일'군 5명 측량원 10명을 각각 파견할 것인 바, 1956년 10월 20일에 중화 인민 공화국 길림성 연길현 도문전에서 조사 설계 사업에 대한 실무적 문제 의의로부터 착수하여 1957년 1월 20일 이전으로 측량 조사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며 1957년 3월 10일 전으로 설계서를 작성 완료하기로 한다. 설계 사업은 쌍방의 피해 정도와 금후 확대의 가능성과 공사에 의한 효과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수리 공학적 원리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 여부와 실시 방법 및 지방 위치선을 확정한다. 자국 영토내의 조사 측량 및 설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소도구는 자국의 부담으로 하지 주요한 측량 기구는 자기 기술 일'군들이 지참하기로 한다.

제 3 조 공사 설계서를 각각 자국 정부에서 심의 비준한 후 쌍방 대표들은 1957년 5월 5일 전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장춘시에서 이를 서명 확인한다.

제 4 조 쌍방은 공사 설계서에 서명한 후 신속히 치수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며 준공 기일은 1958년 12월 말로 예정한다. 자국 영토내의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도면 및 자재는 각각 자기의 부담으로 한다. 석재 채취는 공사장 근거리에 있는 상대방의 채석장을 호상 리용할 수 있다.

제 5 조 중화 인민 공화국 길림성 훈춘현 현장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함경북도 경원군 위원장은 공사의 조사, 설계로부터 준공에 이르는 기간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그들의 직권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 서로 면제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그들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각각 자국 정부에 제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제 6 조 양국은 공동 준공 검사조를 조직하여 평방이 각각 자국 영토내에서 설계서에 따라 집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동히 검사한다.
- 제 7 조 상기 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가 끝난 후 만일 일방이 본 의정서에 지적된 지구 내에서 치수 공사를 확장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통지하여 공동히 협의한 후 집행하기로 한다.
- 제 8 조 준공 후의 유지 관리는 양국이 각각 자기 영토 내의 구간을 담당하며 일방의 제방에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본 의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의정서는 1956년 9월 2 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전립성 연전사에서 조인하였으며 조선어 및 중국어도 각각 2 부씩 작성되었는 바 조선어 및 중국어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리부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농업성의  
위임에 의하여

사            분

박            준            채

史            輪

박준채